

늘단비요양원 2024년 예산총칙

제1조 늘단비요양원의 2024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늘단비요양원의 세입 예산 총액은 300,000,000 원 세출 예산 총액은 300,000,000 원으로 한다.

제3조 1) 세입의 주요재원은 아래와 같다. (관 또는 항 단위)

ㄱ. 입소자부담금수입	56,364,000 원
ㄴ. 보조금수입	13,220,000 원
ㄷ. 후원금수입	- 원
ㄹ. 요양급여수입	215,172,208 원
ㅁ. 기타(차입금 등)	15,243,792 원
총계	300,000,000 원

2) 세출의 주요재원은 아래와 같다. (관 또는 항 단위)

ㄱ. 사무비(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218,045,780 원
ㄴ. 재산조성비(시설비)	10,800,000 원
ㄷ. 사업비(운영비, 사업비)	47,620,000 원
ㄹ. 기타(부채상환금, 준비금 등)	23,534,220 원
총계	300,000,000 원

제4조 세출경비가 부족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은 법인이사 또는 시설의 장의 승인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4년 세입 예산안

과목				2024년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세목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본인부담금비용수입	본인부담금수입	22,764,000	408,510	*	1	명	*	12	월	=	4,902,120	2등급 일반 (20%)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376,580	*	1	명	*	12	월	=	4,518,960	3등급 일반 (20%)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45,110	*	3	명	*	12	월	=	8,823,960	2등급 감경 (1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25,950	*	1	명	*	12	월	=	2,711,400	3등급 감경 (1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50,630	*	1	명	*	12	월	=	1,807,560	3등급 감경 (8%)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식재료비용수입	식재료비수입	25,200,000	300,000	*	7	명	*	12	월	=	25,200,000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간식비 수납 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기타비급여수입	4,200,000	50,000	*	7	명	*	12	월	=	4,200,000	입소자의 기타비급여 수입		
					기타비급여 의료비수입	4,200,000	50,000	*	7	명	*	12	월	=	4,200,000	입소자의 개인의료비,촉탁비 수입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시군구보조금	시군구보조금	11,220,000	450,000	*	2	명	*	12	회	=	10,800,00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0,000	*	2	명	*	2	회	=	280,000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위로금			
					70,000	*	2	명	*	1	회	=	140,000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기타보조금	기타보조금	2,000,000					2,000,000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장기요양 급여수입	장기요양 급여수입 (인건비비용 반영)	190,172,208	1,634,070	*	1	명	*	12	월	=	19,608,840	2등급 일반 (80%)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1,506,350	*	1	명	*	12	월	=	18,076,200	3등급 일반 (80%)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1,797,480	*	3	명	*	12	월	=	64,709,280	2등급 감경 (88%)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1,656,990	*	1	명	*	12	월	=	19,883,880	3등급 감경 (88%)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1,732,304	*	1	명	*	12	월	=	20,787,648	3등급 감경 (92%)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2,042,590	*	1	명	*	12	월	=	24,511,080	2등급 기초 (100%)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1,882,940	*				1	명	*	12	월	=	22,595,280	3등급 기초 (100%)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가산금 수입	가산금 수입 (인건비비용 반영)	25,000,000					25,000,000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추가인력배치,야간인력 배치 등)						
기타전입금	기타전입금	10,000,000					10,000,000				기타 법인,개인 등 설치,운영차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00,000					1,000,000				전년도 불용액으로서의 이월된 금액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	1,000,000					1,000,000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5,000					5,000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보조금)	5,000					5,000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 보조금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3,233,792					3,233,792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세입 계				300,000,000													

2024년 세출 예산안

과목				2024년 예산액	산출근거										
관	항	목	세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급여(직접비)	133,800,000	2,750,000	*	1	명	*	12	월	=	33,000,000	요양보호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 정근수당을 포함한다) - 최준녀	
					2,100,000	*	3	명	*	12	월	=	75,600,000	요양보호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 정근수당을 포함한다) - 김준병, 예비인력1, 예비인력2	
					2,100,000	*	1	명	*	12	월	=	25,200,000	간호조무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 정근수당을 포함한다) - 이경희	
			급여(간접비)	29,400,000	2,450,000	*	1	명	*	12	월	=	29,400,000	시설장(원장)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 정근수당을 포함한다) - 김무룡	
		각종수당(직접비)			1,500,000	50,000	*	5	명	*	6	월	=	1,500,000	시설직원에대한 상여금 각종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300,000	*	1	명	*	6	월	=	300,000	시설직원에대한 상여금 각종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각종수당(간접비)	300,000	50,000	*	1	명	*	6	월	=	300,000	시설직원에대한 상여금 각종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직접비)	8,400,000	8,400,00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간접비)	2,450,000	2,450,000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총당금/간접비)	
			사회보험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직접비)	13,934,040	133,800,000	*	3.545			%	=	4,743,210	국민건강 - 급여의 3.545%	
		4,743,210				*	12.95			%	=	614,246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95%		
		133,800,000				*	4.5			%	=	6,021,000	국민연금 - 급여의 4.5%		
		133,800,000				*	1.15			%	=	1,538,700	고용보험 - 급여의 1.15%		
		133,800,000				*	0.76			%	=	1,016,880	산재보험 - 급여의 0.76%		
		사회보험부담금(간접비)		3,061,740	29,400,000	*	3.545			%	=	1,042,230	국민건강 - 급여의 3.545%		
					1,042,230	*	12.95			%	=	134,969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95%		
					29,400,000	*	4.5			%	=	1,323,000	국민연금 - 급여의 4.5%		
					29,400,000	*	1.15			%	=	338,100	고용보험 - 급여의 1.15%		
					29,400,000	*	0.76			%	=	223,440	산재보험 - 급여의 0.76%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	600,000	50,000	*	12			월	=	600,000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드는 각종 경비	
	회의비		회의비	120,000	10,000	*	12			월	=	120,000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운영비	여비	여비	120,000	10,000	*	12			월	=	120,000	시설직원의 국내, 외 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	7,800,000	300,000	*	12			월	=	3,600,000
		50,000	*	12				월	=	600,000	기관 홍보비, 구인광고료, 전단지 등 광고료				
		100,000	*	12				월	=	1,200,000	도서관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200,000	*	12				월	=	2,400,000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렌탈료, 수입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240,000	20,000	*	12			월	=	240,000	공공요금(우편료 등)		
					700,000	*	12			월	=	8,400,000	공공요금(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오물수거료 등)		
					400,000	*	4			월	=	1,600,000	각종세금(자동차세 등)		
					400,000	*	4			월	=	1,600,000	기타세금(재산세 등)		
					50,000	*	12			월	=	600,000	협회가입비		
					50,000	*	12			월	=	600,000	화재보험료		
					1,000,000	*	1			회	=	1,000,000	자동차보험료		
					1,200,000	*	1			회	=	1,200,000	배상책임보험료, 그 밖의 보험료		
		차량비	차량비	120,000	10,000	*	12			월	=	120,000	차량유류대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	1,200,000	100,000	*	12			월	=	1,200,000	시설직원 건강진단비,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상용의류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소계			218,045,780												

